

[서식 예]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(집행력 있는 조정조서에 기초한 경우)

부동산강제경매신청

채 권 자 1. ○○○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2. 〇①〇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.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3. ○②○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채무자 겸 소유자 ⟨★★★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.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청구채권의 표시

금 ○○○원 및 이에 대한 20○○. ○○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○○%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

집행권원의 표시

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○○지방법원 20○○머○○○○(20○○가단○○○)매매대 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정본



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: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

신 청 취 지

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금액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고,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.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신 청 위 인

- 1. 채권자들은 20○○. ○. ○. ○○지방법원 20○○머○○○(20○○가단○○○) 매매대금청구사건에서 '소외 ◈◆◆, 채무자 ◇◇◇는 연대하여 20○○. ○. ○○. 까지 채권자 ○○○에게 금 ○○○원을, 채권자 ○①○에게 금 ○○○원을, 채권자 ○②○에게 금 ○○○원을 각 지급하고, 소외 ◈◆◆와 채무자 ◇◇◇가 20○○. ○. ○○.까지 위 각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20○○. ○○. ○○.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○○%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'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는데, 채무자가 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은 20○○. ○○. ○. 확정되었습니다. 한편, 위 결정문 상의 채무자 ◇◇◇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것을 뒤에 확인하여,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경정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.
- 2. 그러나 채무자는 현재까지 채권자들에게 어떠한 명목의 돈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채권자들의 위 채권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.

첨 부 서 류

1.	집행력 있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	1통
1.	조정결정경정결정문정본	1통
1.	송달 및 확정증명원	1통
1.	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	2통



1. 토지대장등본	2통
1. 건축물대장등본	1통
1. 부동산목록	10통
1. 이해관계인목록	2통
1. 등록세·지방교육세영수필확인서, 영수필통지서	각 1통
1. 집행비용예납서	1통
1. 송달료납부서	1통

2000. 0. 0.

위 채권자 1. ○○○ (서명 또는 날인) 2. ○①○ (서명 또는 날인) 3. ○②○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귀중



[별 지]

경매할 부동산의 표시

- 1. 이시 이구 이동 O O 이 답 665 m²
- 2.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대 180㎡
- 3.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 지상
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콘크리트슬래브지붕 2층 공장
 1층 129.6㎡
 2층 129.6㎡ 끝.



[별 지]

이해관계인의 표시

번 호	구 분	성 명	주 소
	채권자 겸 가압류권자	000	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
1		010	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
		020	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
2	채무자 겸 소유자	$\Diamond \Diamond \Diamond \Diamond$	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
3	근저당권자	◈◈은행	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
4	근저당권자	주식회사 ■ ■ 상호저축은행	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



제출법원	경매할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(민사집 행법 제79조제1항, 제 268조) 민사집행법 제80조
제출부수	신청서 1부(부동산목록 : 30통 제출)
불복절차 및 기간	(신청인) · 신청기각·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(민사집행법 제83조제5항) ·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(민사집행법 제15조제2항) (이해관계인) ·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(민사집행법 제86조제1항).
비 용	• 인지액: 5,000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) • 송달료: (이해관계인수+3)×000원(우편료)×10회분 •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: 채권금액의 1,000분의 2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(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라목 1)} 및 등록 면허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(지방세법 제151조제1항 제2호)납부 • 감정료, 신문공고료, 부동산현황조사료, 매각수수료를 예납하여야 함.
기 타	· 강제경매에 있어서 채권의 일부청구를 한 경우에 그 경매절차 개시를 한 후에는 청구금액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고 그후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잔액의 청구를 하였다 하여도 민사집행법 제88조에 의한 배당요구의 효력밖에는 없음(대법원 1983, 10, 15.자 83마393 결정). ·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서 원리금의 기재가 있는데, 경매개시결정서에는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채권자는 매각대금에서 원리금의 변제를 받을 수 있음(대법원 1968, 6, 3.자 68마378 결정)